

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의 견 서

(정준호 의원)

정원도시국장 이수연입니다.
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,

정원도시국 소관 사안으로

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
의안번호 제2713호

「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
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

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, 위탁보호 등 돌봄 지원에 관한

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

동물보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

우리 국 검토의견은 ‘원안동의’입니다.

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